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재외동포기본법」(제정, 법률 제19402호, 2023. 5. 9. 공포, 2023. 11. 10. 시행)의 국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내 체류동포의 정착지원,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정합성 제고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정의-재외동포정책(안 제2조 제2호)

- 1)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과거와 달리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이 동포정책에 포함됨. 국내 거주 재외동포를 재외동포정책 대상에 포함하여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안정적, 체계적 지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2)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안 제8조)

1) 다음연도 시행계획(전년도 10월말 제출)과 전년도 추진실적(매년 2월말 제출)을 각각 재외동포청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는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각각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종합적인 환류체계 구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종합부처를 명시하고 제출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다음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자체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

#### 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안 제11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목적을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업무 협력 체계 및 업무의 정합성·일관성을 제고하도록 함.

#### 라.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 (안 제17조, 신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2호 바목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과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의 절차별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4. 7. 31. ~ 9. 8.(예정))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차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

카.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정책

제8조제2항 중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를 “추진실적 및 자체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를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 2호 바목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집행, 점검, 공시 등의 절차별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자. (생 략)</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style="padding-left: 20px;">차.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자.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차. <u>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u> <u>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u> <u>원 정책</u></p> <p style="padding-left: 20px;">카. <u>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u> <u>포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u> <u>한 정책</u></p> <p style="padding-left: 20px;">타. (현행 차목과 같음)</p>
<p>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생 략)</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u>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u>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p>	<p>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추진실적 및 자체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u>하며----- -----.</p>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 ⑦ (생략)

<신설>

<삭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등) ① -----  
-----  
----- 강화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  
는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2조 2호 바목과 관련하여 재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 소재 재외동포 관련 단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 집행, 점검, 공시 등의 절차별 필요한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연 락 처	(032) 585 - 3155